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3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780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1. 주식회사 B 2. A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정효민(기소), 김성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율성 담당변호사 서연희(피고인들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4고정413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바 있다. 그러나 자백의 보강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자백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없고, 결국 회사의 실무진이 아닌 대표이사 피고인 A이 직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들이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방송한 음악 중 일부 효과음의 경우에는 그 저작권이 피해자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3) 외부 제작사가 피해자에게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음원을 복제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면, 피해자가 해당 음원을 방송하는 것까지도 허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저작권침해행위 중 85%는 외부 제작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함으로써 이루어졌고,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함으로써 이루어진 저작권 침해행위는 나머지 15%에 불과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외부 제작사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지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자체 제작 프로그램에 관하여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였다. 따라서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저작권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자백에 관한 보강증거 유무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한 것이지 범죄사실의 전부나 중요부분의 전부에 일일이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146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도980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10명의 직원이 있으나 별도로 저작권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없다. 피고인 주식회사 B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2022. 2. 9.부터 2022. 2. 23.까지 5,34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방영한 것이 사실이다. 2017년 또는 2018년경 L협회에서 저작권법에 관한 교육을 받고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로부터 구입한 프로그램에 삽입된 음원의 이용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였으나 회사의 재정상황 등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아가지는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범행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17~120, 178~179면). 그리고 피고인 A은 본인이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등기사항일부증명서(증거순번 6번)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20. 7. 31.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2018. 10. 31.부터 2021. 12. 21. 사이에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발송한 각 우편물(증거순번 7 내지 13번)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가 피해자로부터 음악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로 피해자의 음악저작물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방영한 바 있다는 사실도 인정된다. 그리고 이는 피고인들의 자백내용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위 각 증거(증거순번 6 내지 13번)는 피고인 A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강증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일부 효과음 부분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2도2413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다가 어느 공판기일부터 갑자기 자백을 번복한 경우에는, 자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피는 외에도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과 함께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 경과와 그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번복된 진술이 납득할 만한 것인지 살핀다.

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저작권 침해 내역을 확인한 뒤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자백하였다(증거기록 119면).



② 피고인 A은 피의자신문 당시 "프로그램 중 'M' 부분을 보면 노래가 아니라 효과음의 일부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저희가 만든 저작물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음원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120면), 진술의 취지와 맥락을 고려하면 이는 일반적으로 노래와는 달리 효과음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오인한 데서 비롯된 진술인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들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2025. 3. 21.)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해자와 협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공판기록 206면). 한편, 피고인 A은 2024. 4. 3. 원심 변호인(당심 변호인과 동일하다)을 선임하였고 해당 변호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 이후인 2025. 2. 7.경 사임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이 변호인의 조력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M' 프로그램에 사용되었다는 효과음의 저작권이 피해자에게 귀속되어 있는지 확인이 불가하고, 위 프로그램에 복제된 효과음이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효과음과 동일한지도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자백을 반복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저작물검색'란에 원심판결 별지목록의 '곡명'란 기재와 같은 각 음원의 제목을 입력하면, 쉽게 '저작자명'(저작권을 피해자에게 신탁한 자), '공표일자', '앨범명/프로그램명'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음원이 현재 피해자의 관리 하에 있는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문제가 된 프로그램들은 모두 피고인들이 2022년에 방영하였던 프로그램이므로 피고인들 스스로 프로그램에 복제된 음원과 피해자가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음원 간의 일치 여부를 쉽게 검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은 막연히 프로그램에 복제된 음원이



효과음을 무료로 배포하는 사이트에서 내려 받은 효과음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효과음이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된 음원과 어떠한 점에서 다른지 전혀 밝히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번복한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음원 사용 허락 추정 여부에 대한 판단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제3호는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도 허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정하였고,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관계된 사람들의 권리관계를 적절히 규율하여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영상화'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20211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각 프로그램을 제작한 외부 제작사 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음원의 '복제'에 관하여 허락을 얻은 경우 피해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 역시 허락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한 외부 제작사가 프로그램에 피해자의 음원을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허락을 받았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도 피해자와 저작권과 관련된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은 인정하면서 다만 외부 제작사가 피해자로부터 저작권에 관한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 그 주된 책임은 피고인들이 아니라 외부 제작사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따름이어서 피해자가 프로그램의



'방송'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주의 및 감독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제출한 피고인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N 간의 프로그램 교환 계약서(증제2호)와 그 밖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교환 대상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범위에서 음원 등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다는 점을 미리 확인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에도 사용될 음원의 저작권 귀속 현황을 확인하고 피해자 등 저작권자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등의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가 2018. 10. 31. 최초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저작권법 위반사실을 통지하고 이용허락계약의 체결을 요구한 이래 약 3년 4개월 간 간헐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요구가 담긴 우편물을 피고인들에게 보내면서 피고인들이 저작권침해행위를 중지하고 피해자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고 방영 중인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문제를 검토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A도 '2017년 또는 2018년 경 L 협회로부터 저작권법에 관한 교육을 받았고, 외부 제작사로부터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방송하게 되면서 해당 프로그램에 삽입된 음원의 방송에 관하여 피해자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였으나 재정사정 등으로 적극적인 협의에 나아가지 못하였다'거나(증거기록 119-120면), '직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별도로 저작권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원은 없다'고 하여(증거기록 179면), 저작권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규모, 저작권 침해의 방법 및 피해의 정도,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들은, 외부 제작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방영한 경우 제작사가 프로그램에 사용된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방영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구조가 이중징수의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2.의 다.항에서 인용한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음원의 '복제'를 허락한 경우 해당 음원의 '방송'까지도 허락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중징수의 불합리함은 발생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피해자의 시장지배력을 남



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2018. 10. 31. 최초로 피고인들에게 저작권법 위반사실을 통지하고 이용허락계약의 체결을 요구한 이래 약 3년 4개월 간 간헐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요구가 담긴 우편물을 발송하면서 피고인들이 스스로 저작권침해행위를 중지하고 피해자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아니하자 피고인들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주장의 사정이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피해자는 여타 방송사에 대한 경우와 동일한 계산식을 적용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매출액에 비례한 방송사용료를 청구하고 있다고 하는바, 만약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관련 민사소송(이 법원 2024가단278134 사건으로 계속 중이다)에서 심리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의 사정들이 특별히 양형에 고려될 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및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양형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9

재판장 판사 임선지 _____

 판사 조규설 _____

 판사 유환우 _____